



제 422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42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산지전용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제외	4
2. 허가·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도입 및 재해방지 조치 등	9
3.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의 확대	18
4.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기간 연장	22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24
6. 토석채취허가 등 신청 시 동의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	2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0.

다.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수·마와 같이 그 채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채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채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채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거쳐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채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제16호·제2항제8호, 제15조의2제4항제4호).

나. 신속한 재해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7항·제8항, 안 제15조의2제10항 신설).

다. 임업을 경영하는 산주의 소득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지뢰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 제4항제4호의2 및 제11호의2 신설).

라.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의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4항).

바.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사.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대해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설함(안 제15조의3, 안 제25조의2제2항).

아.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안 제27조제1항).

IV. 검토의견

1. 산지전용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제외

개정안은 “산지전용”의 정의규정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제외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 제16호 및 제2항제8호, 안 제15조의2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략)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

현행	개정안
다]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① ----- ----- ----- ----- -----.
1. (생략)	1. (개정안 내용 생략)
2. ~ 15. (생략)	2.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u>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u>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6. ----- <u>임산물</u> 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 -----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 ----- -----

현행	개정안
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 7. (생략) 8. 그 밖에 <u>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생략)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 ----- ----- -----. 1. (개정안 내용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8. ----- <u>임산물의 재배</u>-----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현행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 3. (생략)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5. (생략) 6. (생략) 7. ~ 11. (생략) <신설> 12. (생략) ⑤ ~ ⑨ (생략) <신설>	----- -----. 1. ~ 3. (현행과 같음) 4. <u>임산물의 재배</u> 4의2. (개정안 내용 생략)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11. (현행과 같음) 11의2. (개정안 내용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개정안 내용 생략)

현행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 재배 용도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전용의 개념에서 제외하면서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마 등은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심거나 캐낼 때마다 현행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식재 및 출하 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산지전용이라는 정의에서 임업경영활동으로 조경수·마 등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조림(나무심기) 및 입목의 굴취(캐내는 것)를 산지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허가·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도입 및 재해방지 조치 등

개정안은 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허가 또는 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행위를 추가하고(안 제10조 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서 삭제하며(안 제15조의2제4항제6호 삭제), ③ 재해방지·응급복구 및 임업경영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조의2제10항), ④ 허가 또는 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및 토석채취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신설하며(안 제15조의3, 제25조의2제2항), ⑤ 산림청장등에게 재해방지를 위한 조사,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안 제37조제1항·제7항·제8항), ⑥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하는 것임(안 제37조제8항·제9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 ----- ----- -----

현행	개정안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 11. (생략) <u><신설></u>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5조의2제10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위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u>제9호의2 및 제9호의3</u>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 15. (생략) 16. (생략)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 ----- ----- ----- -----. 1. ----- --<u>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u>----- 2. ~ 15. (현행과 같음) 16. (개정안 내용 생략) ② ----- ----- ----- ----- ----- -----.

현행	개정안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 7. (생략) 8. (생략) ③ (생략)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 3. (생략) 4. (생략) <신설> 5. (생략)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7. ~ 11. (생략)	1.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 2. ~ 7. (현행과 같음) 8. (개정안 내용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개정안 내용 생략) 4.의2. (개정안 내용 생략)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1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12. (생략) ⑤ ~ ⑨ (생략) <u><신설></u> <u><신설></u>	11의2. (개정안 내용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해방지·응급복구, 임업경영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생략) <u><신설></u>	제25조의2(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현행	개정안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허가 등에 따라</u>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u>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허가 등에 따라</u>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 ----- ----- <u>허가 등과 제15조의2 제10항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u>	3. <u>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u>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⑦ ----- ----- ----- -----

현행	개정안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 4. (생략) ⑧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 ----- ----- <u>자 및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u>-----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⑧ ----- <u>제7항</u>----- ----- ----- ----- ----- ----- ----- -----.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⑨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⑨ ----- 제8항제1호----- ----- ----- ----- ----- ----- ----- -----.

현행법은 임업경영 지원, 재해방지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산지사용 행위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신속한 복구 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육안 또는 문헌조사로 산지의 형질변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지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재해복구 및 임업경영 지원을 위한 경우를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산지의 형질변

경을 수반하지 않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선관주의의무는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참고로 선관주의의무는 「민법」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²⁾, 「도로교통법」³⁾, 「전자금융거래법」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⁵⁾등의 법률에서 그 규정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음.

-
- 1)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6조(주의의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적 보완사항으로 안 제37조제1항 및 제7항은 산림청장 등 인허가권자가 재해방지를 위한 조사·점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추가하고 있는데, 안 제25조의2 제2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안 제37조제1항 및 제7항의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25조의2제1항”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

3.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의 확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의 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2 및 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 ③ (생략)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개정안 내용 생략)
<u><신설></u>	<u>4.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생략) 7. ~ 11. (생략) <u><신설></u>	<u><삭제></u> 7.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 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의 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12. (생략) ⑤ ~ ⑨ (생략) <u><신설></u>	1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개정안 내용 생략)

현행법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제외한 과수류의 재배는 원칙적으로 산지 전용 대상이므로 임업인이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뢰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는 현행법 제10조제9호의2,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모든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나,⁶⁾ 허가나 신고 대상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산지전용허가 사항인지 불명확한 실정임.

6)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그동안 산림청은 지뢰제거 사업이 일정기간 동안 진행된 후 산지를 원상 복구하는 방식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의 제거행위라는 점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제7호다목(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업무처리지침⁷⁾을 통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관리해 오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과수류의 임간재배’와 ‘지뢰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구조 다변화와 식량자원 확보에 기여하고, 원활한 법률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임간재배(林間栽培)’⁸⁾는 법률에서 직접 정의되지 않아 용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안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2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임간재배의 구체적 범위를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⁹⁾하고 있어 법률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

따라서 해당 용어의 의미가 법률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안 제15조의2제4항4의2 중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임간재배(나무 사이에서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7) 산림청 산지정책과-848호, 2020.2.5.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임간(林間)’은 수풀 사이 또는 숲속을 말하며, ‘임간재배’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는 없음.

9)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아도 임간재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시나 설명은 없으며, 임간재배 시 제한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8. 그 밖의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8. 그 밖의 경우																			
<table><tr><th>대상시설·행위의 범위</th><th>설치지역</th><th>설치조건</th></tr><tr><td>가. ~ 차. (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r></table>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 차.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table><tr><th>대상시설·행위의 범위</th><th>설치지역</th><th>설치조건</th></tr><tr><td>가. ~ 차.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u>카. 과수류의 임간재배</u></td><td><u>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u></td><td><u>임업인이 재배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u> 1) <u>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u> 2) <u>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u> 3) <u>임간재배에 해당할 것</u> (<u>임간재배를 위한 숙아베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u>)</td></tr></table>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 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카. 과수류의 임간재배</u>	<u>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u>	<u>임업인이 재배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u> 1) <u>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u> 2) <u>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u> 3) <u>임간재배에 해당할 것</u> (<u>임간재배를 위한 숙아베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u>)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 차.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 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카. 과수류의 임간재배</u>	<u>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u>	<u>임업인이 재배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u> 1) <u>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u> 2) <u>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u> 3) <u>임간재배에 해당할 것</u> (<u>임간재배를 위한 숙아베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u>)																		

- 10) ‘과수류’의 경우 법률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어사전적으로 ‘과실을 맺는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인 농산물 표준규격의 ‘과실류’와 산림청 고시인 임산물 표준규격의 ‘수실류’를 합하여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등록 구분의 한 종류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이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오해의 소지나 법률해석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임.

4.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기간 연장

개정안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에 대하여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의무보관하도록 한 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 ③ (생략) ④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5년----- -----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서류 및 자료¹¹⁾의 보관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¹²⁾에서는 산

1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에는 산림조사·분석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서류, 재해방지 등에 대한 조사·분석서 등이 해당됨.

1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

지전용허가 신청 시 중 하나로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서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기간을 기존 3년의 범위에서 이 법 시행규칙 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유효 기간인 5년에 맞추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개정안은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③·④ (생략)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르면,¹³⁾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52조¹⁴⁾에 따라 산림청장이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산림청장의 시·도지사 권한 위임 사무에 대한 시·도의 실질적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산림청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권한과 ‘3만㎡ 미만 보전산지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예정이며, 이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어 권한 위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3) 「산지관리법」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14) 「산지관리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토석채취허가 등 신청 시 동의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

개정안은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 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 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 려는 자는 <u>광업권자나 조광권자</u> (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 <u>제3조제3호의3</u> ----- ----- ----- ----- ----- <u>채굴권자</u>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이 중 광업권은 「광업법」에 따라 채굴권 및 탐사권으로 구분¹⁵⁾되고 있어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채굴권자 및 탐사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그런데 광업법 개정(2010. 1. 17.)에 따라 광업권이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되었는데, 「광업법」상 탐사권¹⁶⁾이란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가 아닌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탐사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토석채취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림청과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토석채취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⁷⁾

문 의 처
02)6788-5423

15)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사권
2. 채굴권

1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17)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1079, 2021.7.6.

참고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제도 개요

□ 개 념

- (산지전용)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용도 : 조림, 숲 가꾸기, 임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시설물 설치, 50cm 이상 형질변경 제외), 산지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허가 및 신고제도

- (대상)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구분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서 정한 범위 이외
산지전용신고	임산물 생산시설, 자연휴양림, 숲경영체험림 등 산림공익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 시설, 건축허가 대상인 농림수산물 창고 등
산지일시사용허가	노천·굴진 채굴, 광해방지사업,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궤도시설 등
산지일시사용신고	산림경영관리사·농막,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임도, 임산물 운반로, 농업용수 개발시설, 임산물재배(50cm 이상 절·성토 수반) 등

-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권한

허가권자 \ 구분	산지면적	보전산지
시·군·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	50만㎡ 미만	3만㎡ 미만
시·도지사/지방산림청장	50만㎡ 이상 200만㎡ 미만	3만㎡ 이상 100만㎡ 미만
산림청장	200만㎡ 이상	100만㎡ 이상



